

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

제정 2005. 12. 1 개정 2009. 3. 1.
개정 2013. 3. 1. 개정 2015. 8. 31.
개정 2016. 6. 2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내에서의 성희롱·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6.6.23.>

②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신체적,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6.6.23.>

③ “피해자”라 함은 성폭력·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6.23.>

④ “가해자”라 함은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·성희롱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6.23.>

⑤ “신고인”이라 함은 성폭력·성희롱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6.23.>

⑥ “피신고인”이라 함은 성폭력·성희롱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6.23.>

⑦ “사건관련인”이라 함은 피해자, 가해자, 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6.6.23.>

⑧ “2차 가해자”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,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중용하는 행위,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·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. <신설 2016.6.23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,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, 이에 는 교원(비전임 교원, 연구원 포함), 직원(임시직 포함), 학생(휴학생, 교환학생포함)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(2차 가해자 포함)로서 관련된 성폭력·성희롱을 포함한다. <개정 2016.6.23.>

제4조(피해자 중심의 원칙)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조사, 심의,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제5조(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) ① 성희롱·성폭력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·성명·연

령·직업·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성희롱·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성희롱·성폭력 대책위원회

제6조(성희롱·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) ① 학생, 교원, 직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과 신고접수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성교육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를 두며, 절차 처리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설치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<개정 2015. 8.31.>

②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 교직원 1인, 여교직원 1인 이상을 성희롱고충상담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 8.31.>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교원 6인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하고 교원위원 중 여성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각 위원의 임기는 위원은 1년으로 하며, 중임 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)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센터 업무 및 사건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삭제 <2016.6.23.>
2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
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조사·중재
4.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처분발의
5.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

제9조(회의) ① 센터에서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5.8.31.>

②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심의·의결)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·의결한다.

제11조(징계 및 조치)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1. 가해자의 공개 사과

2.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

3.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,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,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보 칙

제13조(시행세칙)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정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규정을 폐기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